

의안번호	2208701
의 퇴 인	이용우 의원
회 답 일	2025.7.15.
추 계 번호	25B13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의무화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 2,800만원, 2030년 6억 3,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0억 6,800만원(연평균 6억 1,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안 제56조)	628	588	602	617	633	3,068	614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순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주요 가정의 변경, 채용인원 등 사업의 실제 추진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야 함. 이 경우 재해발생의 기술적, 관리적, 조직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의무·제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 발생의 기술적, 관리적, 조직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 참여하는 공단은 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전문가 또는 공단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제5항)	의무규정
2	안 제56조의2 (재해조사의견서 공개·교부 등) 신설	공단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 중대재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단의 의견서(이하 “재해조사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1항) 1.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2. 재해자의 인적사항 및 상해정도 3. 재해의 경위 및 내용 4. 작업현장의 위험요인 및 추정되는 재해발생원인 5.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재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6조의3에서 같다)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의견서를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공개하여야 함. 다만,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작성이 시험, 분석, 전문가 검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작성이 완료되는 때까지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교부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할 수 있음(제4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	재량규정
		제4항에 따라 공개·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재해조사의견서 공개·교부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56조의3 (중대재해 수사 결과보고서 공개·교부 등)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이 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수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함. 다만,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이 공개됨으로써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 외의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교부할 수 있음(제1항)	의무·재량규정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의 공개·교부 범위에 관하여는 제56조의2제4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로 봄(제2항)	의무규정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 공개·교부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 서의 공무원의 제) 신설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의무규정
5	안 제17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제56조제5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u>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전문가 또는 공단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u>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제1항)	○	• 공식추계(제1항 전단) - 본문참조
		×	• 미첨부(제1항 후단)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있어 재해발생의 기술적, 관리적, 조직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현재 외부 관계전문가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1조 등¹⁾에 근거하여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장래에 발생할 중대재해의 발생건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를 관계전문가에게 요청할 횟수, 원인조사와 관련한 관계전문가의 인건비 등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 제11조(감독반의 편성) ③ 본부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관련학과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등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재해조사방법)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조사 의견을 받아 재해조사 내용, 조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4조(정부의 책무)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이하 생략)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제2항)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직원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를 의무화하면서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단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물량이 확대될 경우 공단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²⁾ 등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공단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확대 여부 및 규모, 공단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확대시 이를 공단의 자체 수입이나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충당할지 또는 국가가 공단에 비용을 지원할지 여부와 그 규모를 현시점에서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1-3	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제3항)	—	• 미대상 - 개정안은 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면서 공단 직원의 재해 발생 사업장 출입 및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 면담과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4	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제5항)	—	• 미대상 - 개정안은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공단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주제여부	비고(주제 미 실시 사유)
2	안 제56조의2(재해조사의견서 공개·교부 등)	—	• 미대상 - (제1항)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감독관의 요청시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과 함께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여 그 조사 결과물을 ‘재해원인조사 의견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처리에 있어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근로감독관은 해당 ‘재해원인조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해당 중대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 중대재해에 관하여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제2항)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해조사의견서를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공개하도록 하면서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항이 시행되어도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제3항~제5항) 개정안은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기간 연장, 부분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56조의3(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 공개·교부 등) 신설	—	• 미대상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162조의2(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 제) 신설	—	• 미대상 -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및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별도의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170조(별칙)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벌금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³⁾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과 기관부담요율 전망치 및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⁴⁾를 적용하여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법 제56조⁵⁾는 중대재해⁶⁾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 요율,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2025.4.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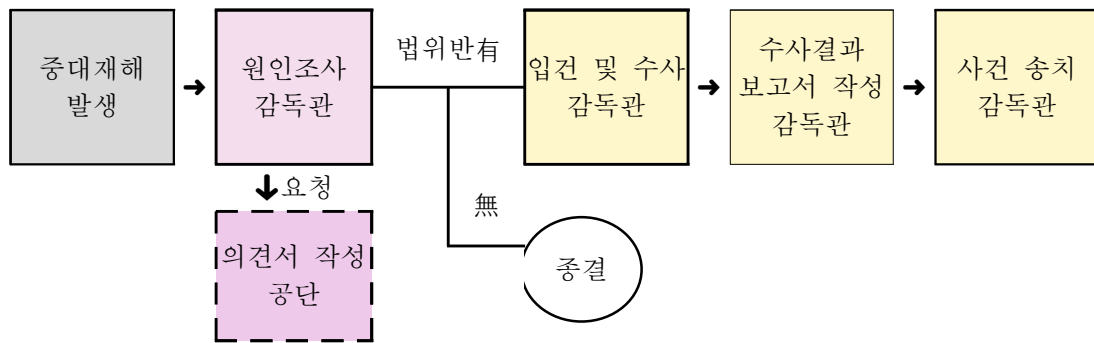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0	2.4	2.4	2.4	2.4	2.4	2.4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	13.004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883	4,981	5,080	5,182	5,285	5,391	5,499

5)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6)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각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훈령 521호)⁷⁾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그림 1] 중대재해 원인조사 프로세스



자료: 고용노동부

-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원인조사 여부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지병 등 중대재해의 발생원인이 명백할 경우 등에는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나⁸⁾,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므로 중대재해 원인조사 물량의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중처법, 산재보험법 및 진폐법(이하 "법령"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및 상담
5. 그 밖에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8) 개인지병에 의한 재해 등이 명백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확인 등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6조제2항에 따른 재해임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하고 있음

[표 2] 중대재해 발생건수 및 조사건수: 2020~2024년

(단위: 건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중대재해 발생건수(A)	1,198	1,236	1,533	1,567	1,584	1,424
중대재해 조사건수(B)	775	790	757	767	744	767
발생건수와 조사건수 차이(C=A-B)	423	446	776	800	840	657

주: 고용노동부 내부참고용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작성 시점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의무화되므로,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증가한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인원에 인건비를 적용하여 추계
- (필요인원)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필요인원은 중대재해 보고서의 작성건수의 증가량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소요시간을 이용하여 산출
 - 필요인원은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보고서 작성건수 증가량에 1건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시간을 곱하여 산출
 - (소요시간) 1건의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시간은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산출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소요시간은 30시간으로, 이는 초동 조사 16시간(8시간(이동+조사)×2명), 자료 제출 요구 및 관련 부처 협조 4시간, 보고서 작성 10시간으로 구성⁹⁾
 - 추계기간 동안 소요시간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향후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변화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중대재해에 대한 원인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면, 매년 19,710시간(=657건×30시간/건)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9) 자료: 고용노동부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시간: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추가 보고서 작성건수(A, 건)	657	657	657	657	657
보고서 작성 시간(B, 시간/건)	30	30	30	30	30
추가 소요시간(C=A×B, 시간)	19,710	19,710	19,710	19,710	19,710

주: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가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명의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연간 근로시간(2,080시간¹⁰⁾)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되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10명¹¹⁾의 인력이 필요함
- (인건비)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의 임금(4,955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전망치와 기관부담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 인건비는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에 편성된 본부 소속 7급 공무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와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봉급, 성과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의 합계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향후 수당 변화로 인해 달라질 수 있으며, 신규 채용 인력의 채용 급수가 달라질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호구 구매 비용(1인당 42.8만원¹²⁾)을 포함하여 산출하며,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기준 1인당 자산취득비(4,981천원)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
 - 신규 채용으로 인한 사무실 임차료 및 기본경비는 기존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가정
 - 신규 인력의 채용으로 인해 교육비, 출장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10)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연간 52주 = $40 \times 52 = 2,080$ 시간

11) 인건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올림으로 산출함

12) 자료: 고용노동부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의무화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 2,800만원, 2030년 6억 3,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0억 6,800만원(연평균 6억 1,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1인당 평균임금(A)	51	52	53	54	56	266	53
기관부담 요율 적용 1인당 평균임금(B)	57	59	60	62	63	301	60
신규 채용 인력(C, 명)	10	10	10	10	10	—	—
인건비 총액(D=B×C)	574	588	602	617	633	3,013	603
자산취득비 총액(E)	50	—	—	—	—	—	—
보호구 구매비 총액(F)	4	—	—	—	—	—	—
합계(G=D+E+F)	628	588	602	617	633	3,068	614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주요 가정의 변경, 채용인원 등 사업의 실제 추진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주요 가정의 변경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결과는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의무화될 경우 필요한 소요 인력의 규모를 중대재해 원인조사 증가량 및 조사 소요시간 등에 대한 가정을 통해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실제 채용인원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